

case  
4

## 주방용 스테인리스강 싱크 키트

###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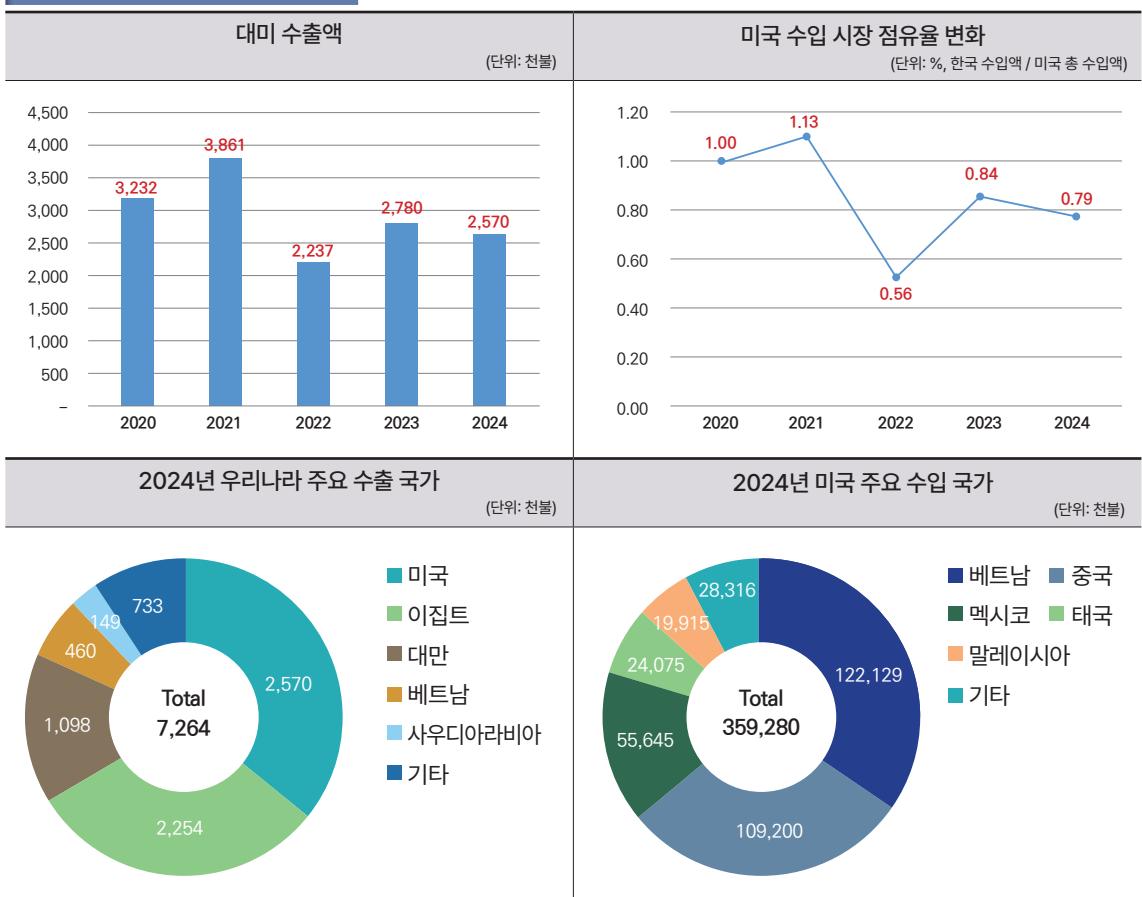
사례명	주방용 스테인리스강 싱크 키트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및 원산지표시
사례번호	NY N335300 (2023.09.29.)
사실관계	중국산 그리드/디쉬 랙, 배수 조립품 및 캡, 풀다운 수전을 태국으로 수입하여 태국에서 생산한 싱크와 소매 포장한 뒤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p>①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p> <p>싱크 키트의 본질은 태국에서 생산된 싱크에 의해 부여되므로,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는 태국이며, 이에 따라 제301조에 따른 무역제재 대상이 아님</p> <p>② 부속품의 개별 원산지표시 의무</p> <p>그리드/식기 랙, 배수 조립품 및 캡, 풀다운 수전은 세트 포장에도 불구하고 개별 독립된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각 구성요소에 중국산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설치용 하드웨어는 최종 설치 시 싱크에 통합되어 독립적 정체성을 상실하므로, 별도 원산지표시가 요구되지 않음</p>
근거법령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 I 품목개요

### 품목정보

HS Code	제7324.10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
	미국 기본세율	3.4%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제7324.10호 시장 정보



❖ 자료: K-stat

## II 판정사례

### 사례명

[주방용 스테인리스강 싱크 키트]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및 원산지표시

### 사례번호

NY N335300 (2023.09.29.)

### 사실관계

#### 요청자

Kraus Plumbing USA, LLC (대리인: Sonnenberg & Cunningham PA)

#### 제품명

- 주방용 스테인리스강 싱크 키트 2종
  - 모델 번호: KHU100-27
  - 모델 번호: KCH-1000

#### 제품

#### 구성

- KHU110-27 (Standart PRO)**
  - 27인치 언더마운트형 16게이지 스테인리스강 싱크(태국산)
  - 스테인리스강 그리드/디쉬 랙(중국산)
  -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배수 조립품 및 캡(중국산)
  - 설치용 하드웨어, 템플릿, 설명서 포함
- KCH-1000 (Loften)**
  - 33인치 드롭인/언더마운트 겸용 스테인리스강 싱크(태국산)
  - 스테인리스강 그리드/디쉬 랙(중국산)
  -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배수 조립품 및 캡(중국산)
  - 풀다운 수전(중국산)
  - 설치용 하드웨어, 템플릿, 설명서 포함

#### 용도

- 가정 주방용 조리대(싱크대)에 설치되어 음식물 준비, 설거지, 배수처리를 위한 통합형 구성품

#### 완제품 HTSUS

- 7324.10.0050

### 제조공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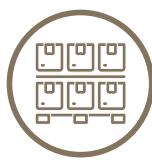
01

중국산 부품  
태국으로 수입



02

태국에서 싱크 제조



03

키트로  
소매 포장



04

미국 수출

### 상세공정

- 중국산 부품을 태국으로 수입
- 태국에서 싱크 제조
- 중국산 부품 및 태국산 싱크를 키트로 소매 포장
- 미국으로 수출

## 쟁점사항

- ✓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 부속품의 개별 원산지표시 의무

## 관련 법령 및 분석

1

###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검토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된 공정이나 재료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인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발생시켜야만 새로운 원산지가 될 수 있음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1940)
-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 2d 1201 (Fed. Cir. 1993)
- ❖ 참고 판례: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207 U.S. 556 (1908)
-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542 F. Supp. 1026 (1982)

- 가공 또는 결합 과정이 단순하거나 경미하여 물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판정 결과

- ▣ 해당 사안에서 태국에서 제작된 싱크는 가치, 무게 및 기능 면에서 세트 전체의 본질을 결정하므로 완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품으로 간주되며, 여러 중국산 부품들이 결합되기는 하나, 싱크 자체를 이전과 다른 명칭, 성질, 용도를 가진 새로운 상업적 물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은 아님
- ▣ 일반해석규칙 3에 따라 세트로 구성된 상품 중, 세트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품목이 제301조 조치 대상일 경우 전체 세트가 제301조 적용 대상이 되나, 해당 사례의 경우, 핵심 구성품인 싱크가 태국산이므로, 제301조 적용 대상이 아님

2

### 부속품의 개별 원산지표시 의무

####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돼야 함

## 관련 법령 및 분석

- CBP Treasury Decision 91-7에 따르면, 세트, 혼합물 또는 복합 물품에 포함된 구성품이 실질적으로 변형되지 않은 경우, 각 구성품은 개별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 판정 결과

본 사례에서, 그리드/식기 랙, 배수 조립품 및 캡, 풀다운 수전은 세트 포장에도 불구하고 개별 독립된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각 구성요소에 중국산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설치용 하드웨어는 최종 설치 시 싱크에 통합되어 독립적 정체성을 상실하므로, 별도 원산지표시가 요구되지 않음

## 결론

- ✓ 핵심 구성품인 싱크가 태국에서 제조되었으므로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는 태국이며, 이에 따라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이 아님
- ✓ 중국산 구성품(그리드/식기 랙, 배수 조립품 및 캡, 풀다운 수전)은 개별 독립된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각각의 부품에 중국산임을 표시해야함

## III 시사점

- 싱크 키트의 경우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싱크가 제조된 국가가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가 될 수 있음
- 원산지표시 목적상 세트, 혼합물 또는 복합 물품에 개별 정체성을 유지하는 외국산 부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해야함

## IV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35300 (2023.09.29), <https://rulings.cbp.gov/ruling/N335300>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1908),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96747/anheuser-busch-brewing-assn-v-united-states/?q=Anheuser+Busch+Brewing+Association+v.+The+United+States+1908&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96747/anheuser-busch-brewing-assn-v-united-states/?q=Anheuser+Busch+Brewing+Association+v.+The+United+States+1908&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